

유통식품 등 검사

- ❖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로 부정·불량식품 유통 차단 및 점검
- ❖ 자가품질검사(민원)를 통한 생산제품 검사

○ 관계법규

- 식품위생법 제7조(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)
제9조(기구 및 용기·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) 및 제14조(식품등의 공전)
제22조(출입·검사·수거 등) 및 제31조(자가품질검사 의무)

○ 검사기간 : 2023. 12. 1. ~ 12. 31.

○ 검사건수 : 531건 (부적합 0건)

○ 검사항목 : 보존료, 중금속, 타르색소, 인공감미료, 영양성분, 벤조피렌, 곰팡이독소, 방사능 등

○ 검사방법 : 식품공전, 건강기능식품공전, 식품첨가물공전, 식품기구 및 용기·포장공전
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

○ 검사결과

구 분	검사건수	부적합	부적합 내역	비고
합 계	531	-	-	-
유통 식품 검사(관원)	480	-	-	-
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	25	-	-	-
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	0	-	-	-
자가품질검사(민원)	26	-	-	-
먹거리안전망 사업	0	-	-	-

○ 조치사항

-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 신속 보고
- 시, 군·구 부적합 내역 통보

○ 향후계획

- 유통식품 상시검사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관리 강화
- 다소비 다빈도 유해물질 검사